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완료	미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신청시	0		서약서	-	건본주택 비치, 무주택 인증서류(서약서로 대체)		
	0		당첨자 약약서	-	건본주택 비치		
	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본주택 비치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0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본인 발급용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일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 참조)(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0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 복무군인이 수도권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해당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0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본인			
	0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미비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기준 및 증빙서류

■ 가구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 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 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주 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 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이천 마장 휴먼빌 까사포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기준 및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해야 함	* 접수장소

■ 자산기준 확인 방법

구분	내용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부동산가액 3.31억원 이하)충족하는 세대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부동산소유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후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 1. 사례1) 청약자격 상 무주택으로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공시가격 2. 사례2) 청약자격 상 무주택으로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3. 사례3)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토지분]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4. 사례4) 토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의 합이 3.3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로 당첨 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발급 및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복주택 내방 하여 증빙 하여야 합니다.)